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6-86호

2026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,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모집공고

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성장지원을 위한 「**2026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,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**」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8. 3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

1. 사업개요

□ **사 업 명** : 2026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,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

□ **모집기간** : 2026.8.3.(월) ~ 2026.8.21.(금) 18:00

□ **모집대상** : ①, ②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

① **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**(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)

② **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**(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)

※ 재단 사업 중복 수혜여부, 금융기관 채무 여부,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, 지정요건 유지 여부 등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2.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

□ **지원규모 : 10개 기업(내외)**

□ **지원금액 : 아래 각 유형에 따라 지원**

o 2026년 신청가능금액 *** 2, 3차년도 지원은 사업점검 및 심사 통해 지원 여부 결정**

① **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** : 2천만 원(지정기간 3년간 4천만 원)
② **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** : 1.5천만 원(지정기간 3년간 3천만 원)

※ 자부담 원칙
- 자부담 우선집행이 원칙, 사업축소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비는 변경 불가
-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% 자부담(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)
* (예시) 총사업비 2천만 원인 경우, 신청금액 1천 8백만 원, 자부담액 2백만 원

-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원
- 재단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구매업체(제공업체)에 직접 지급하며, 사업 수행 결과물(또는 구매물품)의 현장확인 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, **신청기업에서는 사전에 제공업체와 해당사항에 대한 조율이 끝나있어야 하며, 계약금 등 제공업체에서 사전결제를 원할 경우 자부담 후 진행**해야함.
-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,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항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항목은 지원 불가

※ 예시: 지자체-기계구입, 재단-기계구입/ 추후 중복수혜 확인시 지원금 환수

□ **지원가능 항목(사업개발비)**

1. 브랜드(로고), 기술개발 등 R&D 비용(선진기업의 기술이전 비용 포함)
2.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·마케팅·부가서비스 개발(생산품의 소비시장 "론칭"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)
3. 서비스,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
4. 시제품 제작비, 예술·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·서비스 개발
5.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
6. BS/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(고객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포함)
7. 특허·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
8.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
9. (신규)홈페이지 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쇼핑몰 구축을 위한 비용
10. 사업개발 수행에 필요하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계·장비 등 자본재의 매입, 임대비용(사업수행기간에 한함)
11.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

□ 지원불가 항목

1. 임직원 인건비, 퇴직적립금, 근로자 복지비용(근로자, 대표, 외부인력 등)
2.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
3. 사무용품, 공과금 등 관리 운영비, 건물 임차료
4.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, 노무, 회계, 경영컨설팅 비용
5. 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
   (단,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총 사업비의 20% 한도로 인정)
6. 회계감사 비용, 소송대리 비용
7. 보험료, 기부금, 자금조달비용(대출 이자), 각종 세금(부가세 등)
8.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
9. 기타 본 사업의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

신청제외 대상 및 업종

• **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감액하여 지급**

- 재단의 사회적기업설립지원사업,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, 영농정착자금(시설, 운영비), SF창업지원(이야기를담은라멘), 소규모 신규창업지원(생활밀착형, 푸드트럭, 전통시장), 창업사업화지원, 채용기업지원사업 등 수혜금액 2,000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은 자

• **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정 제외**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

* **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법원의 법인회생제도에서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.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**
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

* **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승인)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**

- 신청 마감일 기준, 휴업 중인 기업

3. 선정절차

□ **서류검토**

o 서류검토 : 신청자격 등 서류 근거 적격 판단(재단)

□ **심사**

o 심사위원회 :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통해 선정

o 심사기준 및 항목

심사항목	세부 평가 항목
사업계획 적정성(50)	지원의 필요성, 사업계획의 충실성, 실행가능성,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, 파급효과 등 향후 활용 정도
신청금액 적절성(20)	신청예산 세부 산출항목 가격의 타당성, 구체성, 필요성, 적절성 등
사업수행 능력(20)	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, 사업의 전문성 등
북향민 관련 사회공헌(10)	북향민 일자리 창출 현황 및 향후계획, 북향민 관련 사회공헌 계획 등

□ **선정** : 심사위원회의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

□ **일정** ※ **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.**

공고 및 신청 접수	⇒	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	⇒	심사 및 선정	⇒	약정체결 및 사업수행	⇒	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
8.3~8.21		8.21~8.25		8.31(월)		9월1주 이후		~11.30

4. 신청방법 : 문서24로 제출

□ **제출방법** : *문서24 접속 > 회원가입(법인) > 로그인 후, 문서 보내기 통해 제출서류 발송 * **문서24사이트: https://docu.gdoc.go.kr/index.do**

- 받는기관 :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(남북하나재단)
- 문서제목 : 2026년 모범사업주(또는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) 재정지원 신청서류 제출

□ **접수기한** : 2026.8.21.(금) 18:00까지

□ **문의처** :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기업지원 담당자(☎ 02-3215-5772)

□ **제출서류**

분류	서류목록
1. 신청서류	① 사업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 ② 사업계획서[별지 제2호 서식] ③ 예산운용계획서[별지 제3호 서식]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[별지 제4호 서식] ⑤ 자격확인서[별지 제5호 서식] ⑥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[별지 제6호 서식] ⑦ 북한이탈주민확인서 ⑧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⑨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임금대장(최근 3개월) 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전체) *최근3개월이내 ⑪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*최근3개월이내 ⑫ 사업자등록증 ⑬ 법인등기부등본 ⑭ 재무제표(최근3년) -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(제조업)) -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*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(회계사, 세무사 등)의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* 최근 3개월 이내, 발급한 서류 중 변동사항 없을 경우 인정 가능 예시)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`24년 사업보고서 증빙서류, 모범사업주 1차 지정 증빙서류
2. 신청관련 증빙서류	사업비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(계획서, 견적서, 비교견적서, 사진 등) * 예산운용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

5. 기타사항

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고문 미숙지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.

□ 심사 관련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입니다.

□ 「2026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,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」 관련 서류(회계서류 일체)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관계 기관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□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유용 또는 횡령하는 경우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. 끝.